

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

세계재경저널 Answer

eAnSe.com ••• 2024/8/12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현행 상속세 체계를 비판하며 개선할 방향성을 제시함

주장 취지	현행규정	비판 이유, 개정방향
상속세 폐지	상속세 및 증여세법	상속세 없는 해외로 탈출, 기업가의 사업의욕 저해, 기업존속 단절, 경영권 분쟁
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	소득세법 적용	상속은 미실현 소득(상속은 가족간 재산 명의자만 변경되는 것, 재산의 실제 현금환원이 안 된 것임)
낮은 상속세율	60% (최고부담)	소득세 부담을 최고(49.5%)보다 높은 50~60%(= 50%×할증 120%)
이중과세 문제	소득세	상속 전단계 모든 소득, 재산가치 창출운동에 법인세, 소득세, 4대보험 등 세금과공과, 취득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임대소득세,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소비지출된 나머지에 50%를 부과 : 이중삼중 과세구조임
국내외 균형과세	해외거주자 면제	비거주자 사망시와 비거주자 증여시 해외재산 비과세(해외 탈출유인이 됨)
유산취득세	유산세 개념임	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나의 공제적용 후 다단계 초과누진세율 일괄 적용 → 유산취득세는 유산받은자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된 후, 각각의 누진세율 적용
대주주 할증폐지	최대주주 20% 할증	일반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기업지분가치평가액에 20% 평가증(중소기업만 한시적 제외)
배우자간 과세 예외	10년 단위 6억 공제	부부간 공동노력 재산인데도, 상속시 명의의 변경으로 과세되는 문제 있음 (10년단위 증여공제액도 6억만 적용, 상속공제액은 5억 내지 30억)
완만한 세율구조	10~50% : 5단계	1억까지 10%, 5억까지 20%, 10억까지 30%, 10억 초과 40%, 30억 초과 50% 등 숨가쁘게 수직 상승
너무 낮은 상속공제	자녀 일괄 5억 등	30년전 서울 1주택 가격 5억내외일 때 개정 후 그대로 유지(배우자공제도 기본 5억에 불과, 공동형성재산이므로 과세제외 해야 함)

-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 공인회계사 작성